

부산 우동 경동 주상복합 입주자 모집 공고(안)

-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이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건축과 - 20464 호 (2008.08.18)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 공 급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764-5번지와 51필지
- ▣ 공 급 규 모 : 지하6층, 지상 40 ~ 47층 3개동 278세대
-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면적단위 : m², 금액단위 : 천원)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	주택형(m ²)		세대별 계약면적(m ²)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층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포함)	계약면적			
			TYPE	m ²	전용면적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22042-01	2008000715(01)	A-1	289.1581	220.1652	68.9929	289.1581	128.2081(123.8071)	417.3663	27.9515	22	4층~14층
	22042-02	2008000715(02)	A-2	292.2946	222.5533	69.7413	292.2946	129.5990(125.1501)	421.8935	28.2546	4	15층~16층
	22042-03	2008000715(03)	A-3	291.0551	221.6096	69.4455	291.0551	129.0494(124.6194)	420.1045	28.1348	40	17층~37층
	22042-04	2008000715(04)	A-4	292.9162	223.0266	69.8896	292.9162	129.8745(125.4162)	422.7907	28.3147	4	38층~39층
	22042-05	2008000715(05)	A-5	342.7518	260.9715	81.7803	342.7518	151.9709(146.7541)	494.7227	33.1321	1	40층
	22042-06	2008000715(06)	B-1	208.8753	159.0378	49.8375	208.8753	92.6121(89.4329)	301.4874	20.1909	20	4층~13층
	22042-07	2008000715(07)	B-2	214.1226	163.0331	51.0895	214.1226	94.9385(91.6796)	309.0612	20.6982	4	14층~15층
	22042-08	2008000715(08)	B-3	217.4522	165.5683	51.8839	217.4522	96.4150(93.1053)	313.8672	21.0200	2	16층
	22042-09	2008000715(09)	B-4	212.2049	161.5730	50.6319	212.2049	94.0884(90.8586)	306.2933	20.5128	48	17층~41층
	22042-10	2008000715(10)	B-5	215.2191	163.8680	51.3511	215.2191	95.4249(92.1491)	310.6440	20.8041	8	43층~46층
	22042-11	2008000715(11)	B-6	308.3150	234.7513	73.5637	308.3150	136.7022(132.0095)	445.0172	29.8033	2	47층
	22042-12	2008000715(12)	C	222.9889	169.7839	53.2050	222.9889	98.8698(95.4758)	321.8587	21.5552	82	4층~46층
	22042-13	2008000715(13)	D	226.8778	172.7449	54.1329	226.8778	100.5941(97.1409)	327.4719	21.9311	20	22층~41층
	22042-14	2008000715(14)	E	176.1616	134.1296	42.0320	176.1616	78.1074(75.4261)	254.2690	17.0287	20	22층~41층
	22042-15	2008000715(15)	C-1	276.6143	210.6143	66.0000	276.6143	122.6464(118.4363)	399.2607	26.7389	1	43층

■ 공 통 사 항

- . 1,2순위 청약접수 희망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함.
-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임.
-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 주택형 표기 면적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표기 하였음
-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
-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다만, 건축공정이 30%이상 이어야 함)
-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할 수 있음
-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의 증·감이 있을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사업주체가 장애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사업부지 [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봄.
-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 청약자격 전산등록을 완료하신 분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등 청약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청약신청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등록 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하지 않을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무주택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08.21) 현재 부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20세 미만인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 ※ 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를 세대주로 간주함.
 - ※청약예금 가입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함.
 - 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중 재당첨제한 기간에 있는 자는 제외
 -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이면 신청이 가능함.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이어야 함.
 -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 3자녀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 입주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건설물량의 3%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공급함.
 - 우선순위 배점표(3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배점표 참조)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

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3자녀 특별공급 대상세대

주택형(TYPE)	291.0551(구88.04평형)	212.2049(구64.19평형)	222.9889(구67.45평형)	계	비고
대상 세대수	1	1	2	4	

. 무주택 3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평 점 요 소		총 배 점	기 준	점 수	비 고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자녀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3자녀	35	
	영유아	10	2자녀 이상	10	
			1자녀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 기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 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소유에 따른 유의사항"참조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 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 (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특별시, 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비 고		. (1),(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舊.호적등본)으로 확인 (3) : 건교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1)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2) 자녀 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특별공급 대상자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2항)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추천서외의 인증서, 장애인 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 바람)
	3자녀특별공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6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08.21) 현재 무주택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기타 무주택임을 입증하는 서류등)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표(접수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부산광역시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舊 호적등본)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와 분리세대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자
제3자 대리시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기재)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 견본주택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2007.07.0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2. 특별공급 신청세대 공통사항

접수일시	접수시간	접수장소	동.호수 추천일시	동.호수 추천시간	동.호수 추천 장소	계약체결일
2008.08.26	10:00 ~ 16:00	본사 주택영업부	2008.08.26(화)	16:00	본사 주택영업부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 체결일 내

· 특별공급세대 공급일정

. 특별공급 신청세대 공통 사항

- 특별공급 추천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9조 제①,②,③항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3자녀 특별공급 순으로 추천함
- 특별공급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내에 있는 자 및 과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⑥항 규정에 의한 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특별공급 접수가 불가함.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함(일반공급:특별공급을 제외한 순위내 청약자에게 공급하는 물량)
-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제자유구역 안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으로 기업에 근무하는 자, 3자녀 이상 등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은 우선순위 배점표상의 차순위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신청자의 착오에 의해 잘못 신청된 경우,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기재사항/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자격이 다르거나 기타 상이하게 판명될 경우,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해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청약가점제 적용 안내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2에 의거 1,2순위 공급물량의 전용면적 85㎡이하 75%, 85㎡초과 50%를 우선 공급함.
- . 가점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 가점제의 공급기준

구분	면적구분	공 급 기 준
청약가점제	전용면적 85㎡이하	. 가점점수(산정기준표 참고)가 높은 순으로 75%를 우선 공급함【나머지 25%는 추첨제(일반공급)를 적용함】
	전용면적 85㎡초과	. 가점점수(산정기준표 참고)가 높은 순으로 50%를 우선 공급함 【당 공급물량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서 주택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 공급대상 주택의 50%를 가점제 방법으로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추첨제(일반공급)를 적용함】
	공통사항	. 각 주택형별로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순위를 취득한 자 . 가점제 신청분 중 가점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자 적용기준

구 분	신 청 자 격
무주택 기간 적용기 준	<p>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6조 제③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주택(이하“소형,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 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1조의 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p> <p>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舊 호적등본)에 혼인신고 일자가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p>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부양가 족의 인정기 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p>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청약저 축 가입기 간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 가점제 적용 세부기준

일반기준	. 가점제 점수는 아래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아래의 "감점 산정기준"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 "감점 산정기준"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한다.
------	---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 점 항 목	가 점 상 한	가 점 구 분	점 수	가 점 구 분	점 수
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부양 가족 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입주자 저촉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계	84점 만점 기준	
※ 비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2 제③항, 제12조 제③항, 제⑤항, 제⑦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대상자에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감점점수(아래의 "감점 산정기준" 참조)		

. 감점 산정기준

감점항목			감점점수
구분	기준	소유주택수	
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③항 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 5
		3호 또는 3세대	- 10
		:	:
②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의 2 제①항 제2호 또는 제①항 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 5
		3호 또는 3세대	- 10
		:	:

4. 일반공급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08.21) 현재 부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
- . 상기 주택은 청약가점제 적용 아파트로서 총공급 세대수에서 전용면적별로 85㎡이하 가점제 75%, 추첨제 25%, 85㎡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공급함.
- . 부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등을 가입한 후 부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 신청자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분 전체에 대하여 1건만 신청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시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함.

-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전산 관리 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 과거 분양가 상한제 주택 기당첨자 또는 기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 되어야만 청약 가능함

5.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면적구분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1순위	공통	부 산 광 역 시	2008년 08월27일 (수)	.접수장소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2you.com -아래의 청약신청 안내 참조 . 접수시간 : - 08:30~18:00	. 발표일시 : 2008년 09월05일(금) . 발표장소 : 당사 홈페이지 (WWW.KUUNGdong.COM) 및 본사 주택영업부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 으니 양지 바람)
		전주택형				

2 순 위	공 통 전 주 택 형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2008년 08월28일 (목)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 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 각 주택형에 신청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별표 1의2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 제한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	2008년 08월29일 (금)	.접수장소: 부산은행 본.지점 .접수시간: 09:30~16:30	
3 순 위	전 주 택 형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인터넷. KB모바일 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 (구.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실 분 . 1,2순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으로 청약자격 전산등록을 하신 분	
	KB모바일 . 국민은행 MBANK, KBANK, BANKON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WPI 기종만 가능)	
이용방법 및 이용절차	인터넷 .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인터넷청약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청약센터->주택청약신청
	KB모바일 . SKT : MBANK -> KB Start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주택청약신청 . KTF, LGT : KB뱅크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주택청약 신청	

. 공급 신청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1,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부산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1,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 주민등록 등. 초본 등(배우자 관계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 (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당사 모델하우스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 서류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 착오로 인해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점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주택공급 신청서상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무주택(세대주)기간,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전 확인하고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일반공급 신청 접수 방법

- . 신청접수는 당첨 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 모집공고분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부금,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함
- .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 청약신청 접수 희망자는 단지를 구분하여 신청해야 함
- . 동일한 단지내에서 층별, 동별, 호별, 향별, 라인별, 군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 청약일정을 구분하여 청약하되, 선순위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를 접수하지 않음

▣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 기준)

- 85㎡ 초과 102㎡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①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횡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② 94.08.15일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③ 청약부금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로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는 가입일(기예치금액 변경한 자는 변경일)로부터 2년마다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자 신청요건

①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②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1년 미만인자는 변경전 전용면적으로 신청가능)

③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3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금 액	신 청 금 납 부 방 법
전 주택형	₩10,000,000	가능한 한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부산광역시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가능한 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2008.09.08)이후 (평일 09:00 ~ 16:3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환불장소 : 청약접수한 부산은행 본.지점

. 환불시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 인감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청약자 본인명의로 은행계좌 사본(가급적 부산은행 계좌)

. 제3자 대리환불 시 추가 구비사항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증명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등록증)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부산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3순위 신청자의 신청금에 대해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청약접수시 청약환불금 이체계좌를 신고하는 경우는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중 자동이체 함(단, 부산은행 계좌에 한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 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p>. 추첨 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①,②,③항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3자녀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p> <p>. 당사 모델하우스에서 신청자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동.호수를 결정</p> <p>.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된 경우에는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고 일반공급주택은 청약 무효 처리함</p> <p>.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p> <p>.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 될 수 있음에 유의</p>

가점제	전용면적 85㎡ 이하	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천제로 입주자 선정
	전용면적 85㎡ 초과	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천제로 입주자 선정
	공 통	. 가점제 신청자 중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지역 일반 1순위자 등과 함께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무작위로 선정함
공 통	. 금융결제원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3순위까지 입주자의 모집결과 경쟁률이 일반공급세대수의 120%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 취소세대 발생시 예비 입주자 순번에 따라 추첨방식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 인터넷 . 모바일 . ARS 당첨자 발표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청약 접수한 분에 한함)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제외한 타 은행에서 청약 접수한 분에 한함)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이용기간	2008.09.05(금) ~ 2008.09.14(일), 10일간	2008.09.05(금) ~ 2008.09.14(일), 10일간
ARS	이용방법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코드 : 70]	1369(서비스번호 : 5#)
	이용기간	2008.09.05(금) ~ 2008.09.14(일), 10일간	2008.09.05(금) ~ 2008.09.14(일), 10일간
KB 모바일	이용방법	-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 주택청약 -> PIN 입력 -> 당첨 확인 - KTF, LGT : KB뱅킹 -> 모바일 주택청약 -> PIN입력 -> 당첨 확인	-
	이용기간	2008.09.05(금) ~ 2008.09.14(일), 10일간	-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분 중 당첨자	-
	제공일시	2008.09.05(금) 08:30	-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6)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7)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다음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 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 대장 등본 : 처리일
 -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8)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 모집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검사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모집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주택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모집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장소

. 계약기간(정당당첨자) : 2008. 09. 10 (수) ~ 2008. 09. 12 (금)(3일간), 시간 : 10:00 ~ 16:3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본사

. 특별공급, 무주택 3자녀 특별공급과 1순위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 시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는 당첨 효력 상실됨.

. 정당당첨자 계약체결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공 통 (본인 계약체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단, 인터넷, 모바일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인감증명서 1통(용도:아파트 계약용) 및 인감도장 . 계약금(부산시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본인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세대주 20세 이상 여부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초)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원(舊 호적등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장애인 수첩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장애인의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자로서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가점제 당첨자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통장
제 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손. 비속 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용도:아파트 계약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2005.07.0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기간 선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계약조건 등

-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대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1순위 추첨제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자 또는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첨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포함함.
-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각각 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1건만 계약체결 가능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에 의거)
- . 청약접수일자와 상관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 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음.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번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함.
-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 취소 및 당첨자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당첨계좌 재사용 불가함.
-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로서 재당첨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1항)
-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 각종 인쇄물 및 홍보상의 조감도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및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대금은 지정된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 기타 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준용함

■ 용자지원

-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모델하우스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용자금액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중도금 대출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 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입해야 함.

■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

- . 입주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입주예정일

: 2011년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 범위 내에서 연체요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함.

■ 부대복리 시설

-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제46조,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본 사업부지는 100% 소유권을 확보하였으며, 대한주택보증(주)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음

■ 유의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입주자로 선정된 후(3순위자 포함)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타인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음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을 금융기관에 하는 경우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은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서명)은 반드시 접수창구에서 금융기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받은 자 제외)는 분양주택의 입주시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다른 분양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받을 경우에는 새로이 공급받은 주택에 대한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정산하기로 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람

※ 평형 환산 방법 : 형별면적(m²) × 0.3025 또는 형별면적(m²) ÷ 3.3058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동, 층수, 향 등에 따라 입주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사이버 모델하우스(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음

- . 사이버 모델하우스(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건설교통부 주관 30415-26905(90.10.15)】에 의거하여 철거할 수 있음(단,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 보존)
-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계획은 부산시 해운대구와 협의하여 결정되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람
- . 각세대 실외기실에는 에어컨실외기, 가스보일러, 가스배관, 배수드레인, 환기장치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또는 진동 등이 발생 될 수 있음
- . 입주자에 대한 용자는 계약시 별도 안내할 예정임
- . 단지내 설치되는 공유시설물(어린이 놀이터, 휴게소 등)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수 있음
- .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사시, 부동산 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 일부 저층세대는 산책로, 도로(보행자 및 차도)보다 낮아 외부에서 주택 실내가 보일수도 있음
- . 도시가스 시설에 대하여는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의무가 입주민들에게 있음
- . 계약 후 주방기구, 일반기구 규격 및 배치불만, 전자제품 사용불편 등 건본주택에 설치된 배치 평면 및 가구류에 대하여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등을 입주자 개인의 기호에 맞게 변경할 수 없으며, 내부시설물의 변경 필요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함
- . 발코니 확장시 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의 단열을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가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수 있음.
- . 각종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별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 사업지 인근의 공공시설물(학교 등)의 개발 및 건립(개교 일정)등은 관계기관의 사정 및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주택청약 및 계약 전 본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사업부지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단지내 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 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
 - 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주거목적으로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 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 토지법에 의거 토지취득신고 및 외국환 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 다) 영리목적으로 국내 법인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 민법개정(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주승계예정자를 세대주로 간주하지 않으며, 기존의 호적등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변경됨.
-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분양보증사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분양보증사	보증서 번호(용지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제02312008-104-0000200호(제007416호)	₩312,221,00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 까지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의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보증회사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증속채무**
 -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 주 채무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
 - 입주자 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 선택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 샷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된 금액
 - 보증채권자가 주택분양 보증약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가 주택분양 보증약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함. 단,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 **임시 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중 전체입주금의 90%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예 금 주	계 좌 번 호	금 용 기 관
주식회사 경동소재 박열혜	048 - 13 - 001273 - 6	부산은행 연산동 지점

※ 분양금은 상기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기 바람

▣ 사업주체(시행사 및 시공사)

구 분	회 사 명	지 정 번 호
시 행 사	주식회사 경동소재	부산-주택 2003-0213
시 공 사	경동건설 주식회사	부산-주택 1987-0001
	주식회사 경동	경남-주택 2007-0039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회 사 명	감리금액 (VAT별도)
건 축 감 리	(주)건축사 사무소 G.A	₩954,950,000
전기. 통신 . 소방 감리	(주)세종기술단, (주)세종감리	₩814,000,000

▣ 본 사업장은 사이버 모델하우스(WWW.KYUNGdong.COM)만을 운영함.

▣ 분양문의 : 051) 865 - 1010 (교환 2)